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4
----------	-----

2019년 8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가. 제안이유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서 2020년 3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서울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주민들의 이용료 할인 등 지역주민이 편익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재 위탁)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위탁사무명 :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법인을 통한 운영 필요

3) 위탁 사무내용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업무

○ 강남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수선 등 유지관리 업무

4) 시설개요

○ 시설명 : 강남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 9,716m²

○ 주요시설 : 체력단련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다목적 교육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 등

- 준공년월 : 2002. 1.
 - 이용대상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 5) 위탁기간 : 3년('20.4.1. ~ '23.3.31.)
-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2.01.28.~'05.01.27. (3년, 한국청소년연맹)
 - 2차 : '05.01.28.~'08.01.27. (3년, 흥사단)
 - 3차 : '08.01.28.~'11.01.27. (3년, 흥사단)
 - 4차 : '11.01.28.~'14.01.27. (3년, 흥사단)
 - 5차 : '14.01.28.~'17.03.31. (3년, 흥사단)
 - 6차 : '17.04.01.~'20.03.31. (3년, 흥사단)
-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7)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수익창출형으로 수익금으로 운영)
- 8) 기대효과
- 전문법인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마포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강남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

-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25%)받고 있음.

서울시는 현재 4개 자원회수시설에 각각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중에 있음.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생략)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2년 1월 준공되어 그해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위탁관리 중에 있고 2회차부터 현

6회차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흥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고 있음.

2) 민간위탁 타당성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체력단련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다목적 교육실 등의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차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며, 별도 예산 지원없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수익창출형¹⁾’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음.

3) 위탁관리 개선방안 마련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탁 2회차부터 현 6회차까지 15년간 흥사단에서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바, 보다 많은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또한, 금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지역주민 혜택 강화 및 이용률 제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1)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은 사용수익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개선요청사항 〉〉

- 시설물관리 측면에서의 지적사항(주요 설비 이력카드, 재물조사표 미부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
- 운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주민대표성 확보와 주민참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운영 중심(흥사단 내부 구성비중이 높음)의 운영자문위원회 보다는 주민참여 대표성(지역주민 혜택 강화)을 고려한 구성 필요
- 전기 민간위탁 평가 시 파악된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약 33%에서 당기 32%로 낮아지고 있음. 영향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인원 수는 2016년도 15,465명에서 2018년 17,30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는 감소하였으므로 지속적인 지역주민(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자)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 노원청소년수련관과 공동으로 건설됨에 따라 다른 주민편의시설과 달리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방식임.

[참고자료]

□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현황

시 설	양천주민편익시설	노원주민편익시설 ²⁾	강남주민편익시설	마포주민편익시설
위 치	양천구 목동서로 20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40
개관일	'99. 09. 01.	'98. 01. 22.	'02. 01. 28.	'10. 02. 01.
수탁기관	서울YMCA (양천YMCA)	(재) 푸른나무 청예단	(사)흥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유형	수익창출형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수익창출형
위탁기간	'19.7.6 ~ '22.7.5	'18.1.1. ~ '19.12.31.	'17.4.1. ~ '20.3.31.	'18.12.30. ~'19.12.29.
규 모 (연면적)	5,841.52m ² (지하 3, 지상 3)	8,215m ² (지하 2, 지상 6)	9,716m ² (지하 1, 지상 3)	4,754m ² (지하 2, 지상 4)
용 도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등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상담실 등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등	골프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등
홈페이지	www.ycymca.or.kr	www.youthcenter.or.kr	www.ykasports.net	hwww.mpcc.or.kr
전화번호	02-2652-8083	02-3391-4141	02-3412-2171	02-306-3280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청소년담당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54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강남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서 2020.3.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 나. 우리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2002년 부터 위탁 운영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 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법인을 통한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제반업무
- 강남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수선 등 유지관리 업무

라. 시설개요

- 시설명 : 강남주민편익시설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 9,716m²
- 주요시설 : 체력단련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다목적 교육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 등
- 준공년월 : 2002. 1.
- 이용대상 :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마. 위탁기간 : 3년('20.4.1. ~ '23.3.31.)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02.01.28.~'05.01.27. (3년, 한국청소년연맹)
- 2차 : '05.01.28.~'08.01.27. (3년, 흥사단)
- 3차 : '08.01.28.~'11.01.27. (3년, 흥사단)
- 4차 : '11.01.28.~'14.01.27. (3년, 흥사단)
- 5차 : '14.01.28.~'17.03.31. (3년, 흥사단)
- 6차 : '17.04.01.~'20.03.31. (3년, 흥사단)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수익창출형으로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법인의 운영·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서울시 별도 예산 지원없이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강남주민편익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